

「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8. 16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8. 30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9. 2(금)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농축산과장 이상필)

- 적용범위를 특허청에 등록된 품목 외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 추가(안 제3조)
-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7조제5항)
-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해 홍보 및 판매지원시책 추진 근거 마련(안 제15조의 2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품질인증제도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판매촉진 및 홍보 등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품목에서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확대 하였으며
- 인증상표의 가치 증대를 위해 품질향상 및 판매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홍보를 목적으로 한 농특산물 무상제공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

- 상표사용승인 품목 선정에 따른 객관성 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